1. 재해발생경위

2001년 9월 ○일 23:00경 (주)○○산업 포장공정에서 공빔을 회수하기 위해 회수장에 진입하다 전동차가 미끄러져 운전석에서 내려 후진기어를 넣고 손으로 가속기를 작동하다 전동차가 급회전하며 후진하여 뒤에 있던 포장작업자가 기둥과 전동차 후미 사이에 협착 사망한 재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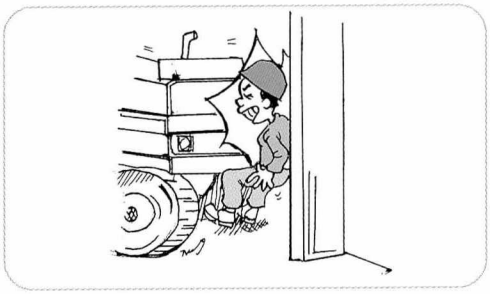

2. 재해발생요인

가. 전동차량 비정상 운전
나. 전동차량 운행통로 부적합(미끄러짐)
다. 차량정비 불량(타이어 마모)
라. 운전미숙(미숙련자 배치)
마. 안전속도 미준수(과속)

3. 재해요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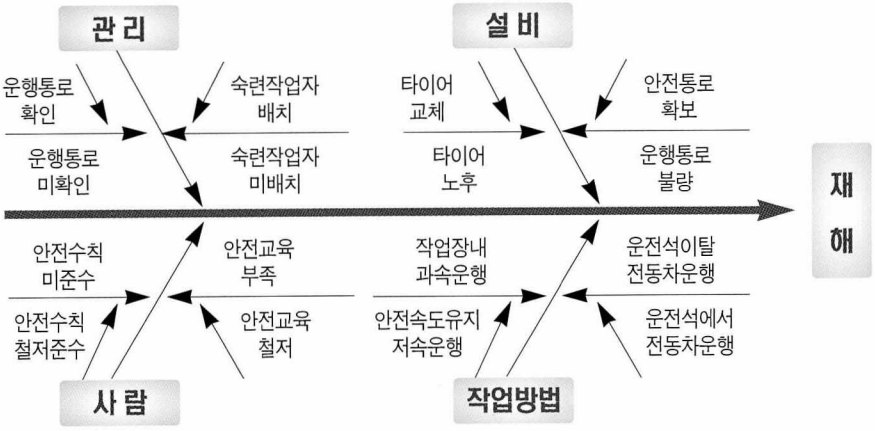

4. 동종재해예방대책

가. 사내 운반차량 정상운전
- 운반차량은 운전석에서 충분한 시야를 확보하고 운행.

나. 전동차량 운행통로 개선
- 전동차량 운행통로 미끄럼 방지.

다. 차량정비 관리
- 전동차량 타이어 마모 점검관리로 미끄러짐 사고 방지

라. 숙련운전자 배치
- 구내운반차량 운전자는 운전기능 검증후 인정된 작업자만 운행허가.

마. 안전속도 유지
- 구내운반차량 8Km/h이하 속도로 안전 운행.

5. 법위반 사항

■ 법 제23조 :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 법 제31조 제1항 :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500만원이하의 벌금

1. 재해발생경위

2001년 08월 11:20경 부산 금정구 ○○건물 신축공사장에서 타일시공 작업자가 핸드그라인더로 타일을 절단하기 위해 1층 임시분전함에서 전원을 인출하여 스위치를 켜는 순간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요인

가. 절연불량
나. 절연용보호구 미착용
다. 외함 접지 미실시
라. 누전차단기 미설치

3. 재해요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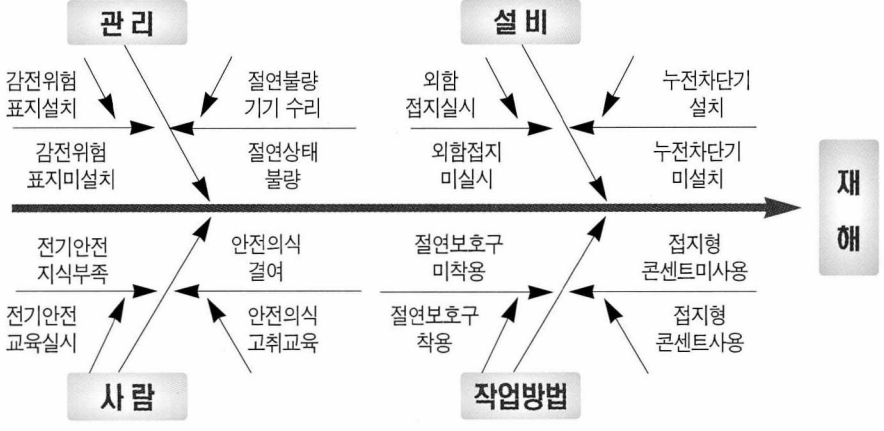

4. 동종재해예방대책

가. 절연불량 전동기계 · 기구 사용금지
- 진동, 충격 등에 의하여 전동기계 · 기구 내부 충전부가 이완되어 금속제 외함에 접촉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 점검실시로 불량 전동기계 · 기구의 사용을 금지.

나. 절연용보호구 착용
- 전기기계 · 기구 사용작업시 절연장갑, 절연화 등 절연보호구 착용후 작업.

다. 외함 접지 실시
- 접지형 콘센트를 사용하여 이동이 심한 소형전동기계 · 기구 외함에 대하여 3종 접지실시.

라. 누전차단기 설치 및 관리
-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정격전류 30mA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내)를 설치하여 항상 정상작동이 가능하도록 동작시험을 주기적으로 실시

5. 법위반 사항

■ 법 제23조 :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 법 제31조 제1항 :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500만원이하의 벌금

1. 재해발생경위

2001년 7월 ○일 15:30경 경기 구리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바닥에 고인 물을 제거하기 위해 전기실 집수정에 설치된 수중모터펌프를 가져와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은 후 누전상태인 수중모터 펌프를 들고 이동중 감전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요인

가. 누전차단기 작동 불량

나. 작업방법 불량

다. 절연보호구 미착용

라. 안전수칙 미준수

3. 재해요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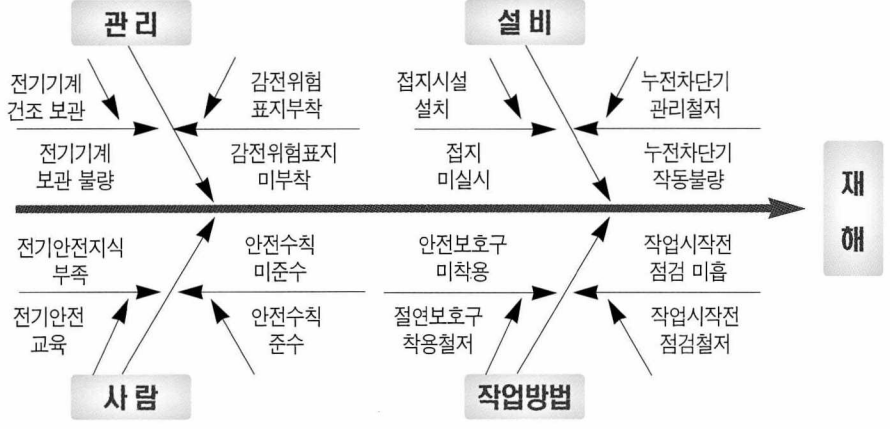

4. 동종재해예방대책

가. 누전차단기 관리철저

- 습윤장소에서 전기기계기구 사용시에는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전로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한 누전차단기 설치 후 사용전에 작동상태 확인철저

나. 작업방법 개선

- 수중모터펌프 사용작업시에는 외함절연상태 확인철저, 누전차단기 작동상태 사전점검, 외함 접지철저, 가설전선 피복손상 점검철저, 정전작업 실시

다. 절연보호구 비치 및 착용준수

- 인체 접촉시 감전 등 위험이 큰 물질 취급시 보호구(절연장갑, 절연화 등)를 비치하여 항상 사용가능토록 관리하고 작업시 필히 착용하여야 한다.

라. 안전보건교육

- 전기 유해위험성 교육 및 표지판 부착(감전위험)

5. 법위반 사항

- 법 제23조 :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 법 제31조 제1항 : 근로자에게 안전교육 미실시시 500만원이하 벌금

건/설/분/야 I

1. 재해발생경위

2001년 8월 ○일 울산시 북구 ○○건설(주) 병원 신축공사장 지하1층 작업장에서 바닥 개구부 덮개용으로 설치된 합판을 옮기려다 개구부로 빠져 약 4m아래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요인

가. 개구부 덮개 설치불량

나. 위험표지판 미부착

다. 추락방지망 미설치

3. 재해요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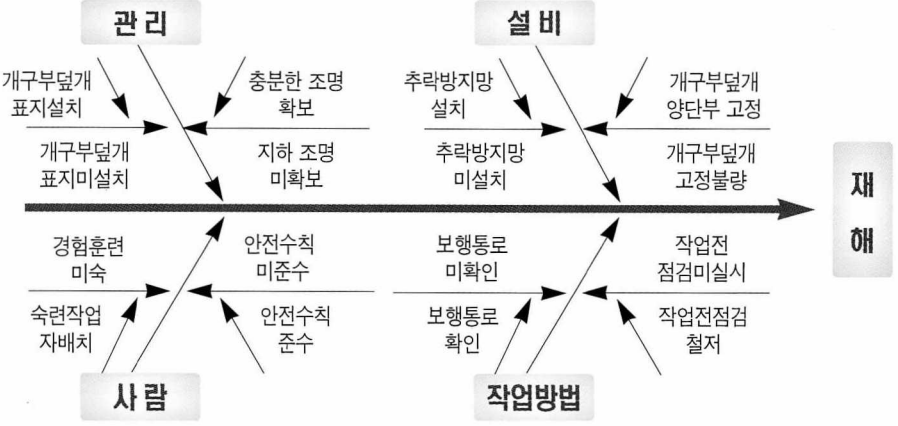

4. 동종재해예방대책

가. 바닥 개구부 방호조치 철저

- 바닥 개구부에 덮개 설치시 덮개가 움직이지 않도록 양단부에 고정조치 하여야한다.

나. 개구부 안전표지

- 개구부 덮개에는 개구부용 덮개여부를 표시하고 위험표지판을 부착하여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함.

다. 추락방지망 설치

- 실내에도 2m이상 추락위험지역에는 추락방지망을 설치하여 추락사고를 방지한다.(추락방지 2중 안전조치)

라. 안전교육

- 위험시설물인 개구부덮개, 유해 · 위험기계기구 안전장치는 안전관리자 허가를 득한 후 조치토록 안전교육 실시하고 숙련작업자를 배치토록 한다.

5. 법 위반 사항

- 법 제23조 :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이하의 벌금
- 법 제31조 제1항 : 근로자에게 안전교육 미실시시 500만원이하의 벌금

1. 재해발생경위

2001년 7월 ○일 서울 양천구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산업(주) 작업자가 지상1층 외벽 형틀작업을 위한 규준틀 설치작업을 하던중 몸을 일으키다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벽체이음용 철근에 목이 찔려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치료중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요인

가. 작업공간 협소
나. 작업장 정리정돈 불량
다. 철근 찔림방지조치 미실시
라. 안전교육 부족.

3. 재해요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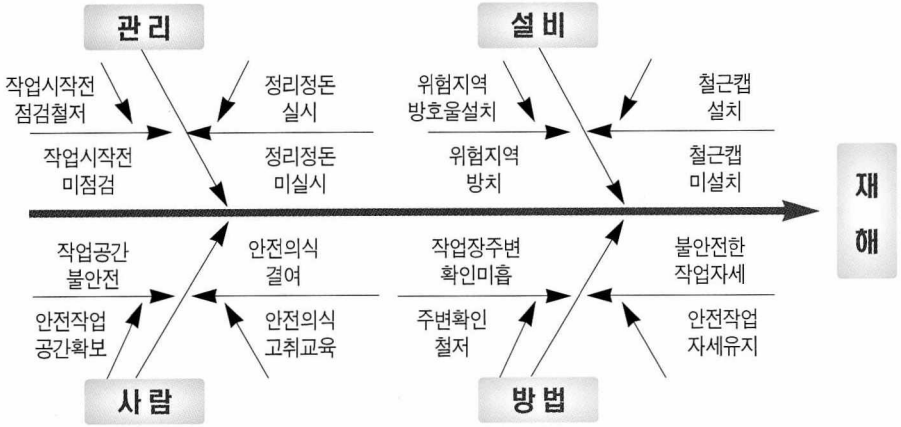

4. 동종재해예방대책

가. 안전한 작업공간 확보
- 작업자가 충돌, 협착, 전도위험이 방호된 안전한 작업공간 확보.

나. 작업장 정리정돈
- 정리란 쓰지 않는 것을 선별하고 쓰는 것을 가지런히 하는 것을 말하며, 정돈이란 한곳에 정연하게 두는 것을 말한다. 즉 정리는 불용품을 제거하는 것, 품종별, 양부별, 사용빈도 등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 정돈이란 두는 장소가 정해져 있고 작업을 방해하지 않는 것, ① 불급불요품을 처분한다. ② 필요품의 장소와 두는 방법을 작업방법에 맞춘다. ③ 원재료 등의 반입을 되도록 작업직전에 하는 것이다.

다. 철근 찔림 방지조치 실시
- 구조물 이음부 철근은 철근캡을 씌우도록 함.

5. 법위반 사항

■ 법 제23조 :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 법 제31조 제1항 :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시 500만원이하의 벌금

1. 재해발생경위

2000년 7월 ○일 22시 30분경 아산시 배방면 국도상에서 도로폭이 약 15m인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천안방면 편도 2차로의 2차로로 과속으로 주행하던 택시가 횡단보도 근처에서 택시 진행측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보행자와 충돌한 사고임.

2. 재해발생요인

가. 심야 조명불량

나. 보행자 어두운색상 의복(확인불량)

다. 운전자 과속

라. 방어운전 미실시

3. 재해요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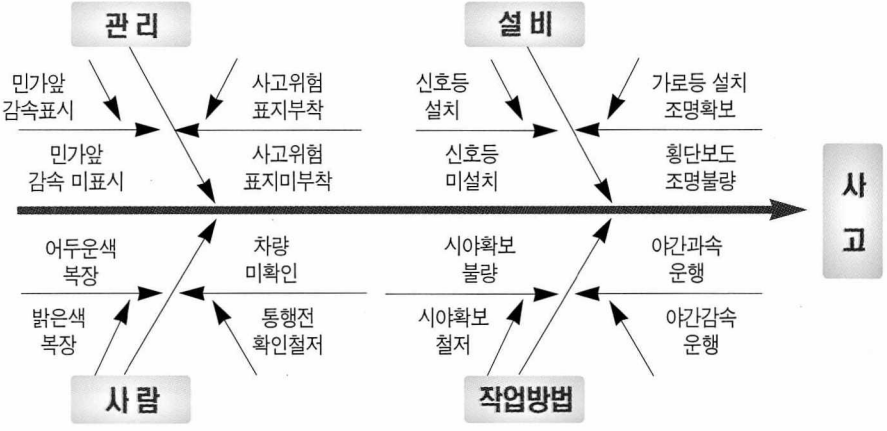

4. 동종재해 방지대책

가. 양호한 조명확보

- 횡단보도 주위 등 교통사고 다발장소에는 가로등을 추가로 설치하여 양호한 조명을 확보한다.

나. 보행자 의복(야간 보행시)

- 야간에 외출시 밝은 색상으로 착복하여 도로상 통행시 운전자가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여 충돌사고를 방지한다.

다. 야간 감속운행

- 야간주행시 정속운행 및 전방주시를 철저히하고 특히 민가지역 통과시 충분히 감속하여 보행자 충돌사고를 방지한다.

* 보행자로 보지않는 경우

- 횡단보도에 누워있거나 앉아있는 경우
- 횡단보도에서 교통정리, 청소작업을 하는 경우
- 횡단보도에서 택시를 잡고 있는 경우
- 주정차 시비로 횡단보도에서 다투고 있는 경우
- 횡단보도 끝선과 인도사이에 설치된 하수구 덮개 위에 서 있는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

5. 법 위반 사항

■ 도로교통법제27조 : 전방주시 소홀

■ 도로교통법제44조 : 안전운행 불이행